

##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공고

옥내 급수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세척·갱생·교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군 산 시 장

### I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총사업비: 금32,000천원
- 사업대상
  - 급수관으로 사용 중인 노후 옥내급수관(아연도 강관 등의 비 내식성 자재 또는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의 관)을 개선하려는 주택
- 지원기준
  - 세대급수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 II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 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단, 실제 거주실태를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지원)
  - 다.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19가구 이하 □ 3층 이하 □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에 준하여 지원)

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만 지원한다.  
(지원대상 구분은 위 지원대상 주택 기준의 가항부터 다항에 따름)

마. 공용급수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

### ○ 지원대상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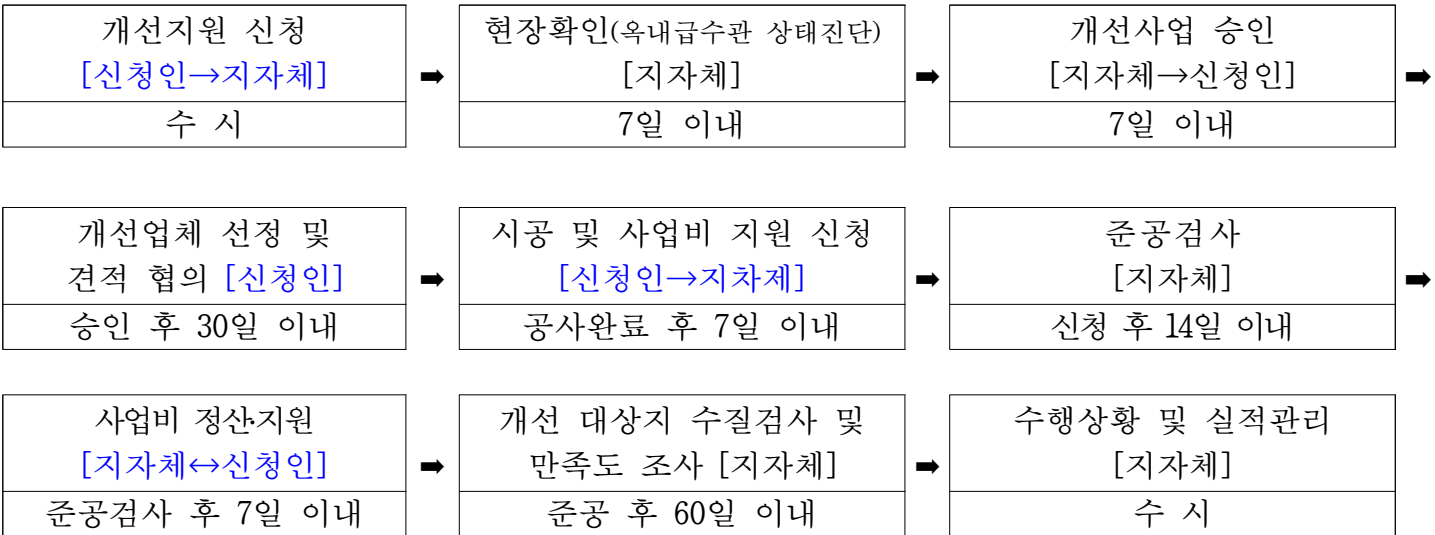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 3순위: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 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

###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 II 사업추진 및 절차



### Ⅲ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6. 4. 6.(월) ~ 5. 4.(월) [29일간]
- 신청기간 : 2026. 4. 6.(월) ~ 5. 4.(월) [21일간]
- 신청자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과)  
※ 근무시간 내(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문의 :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 (063-454-5404)

### Ⅵ 제출서류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2]
3.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4. (공용급수관)
  -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붙임3], 주택소유주 동의서 [붙임4]

- (1)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거나,
- (2)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 주체 (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 가능하나
- (3) 단,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 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 첨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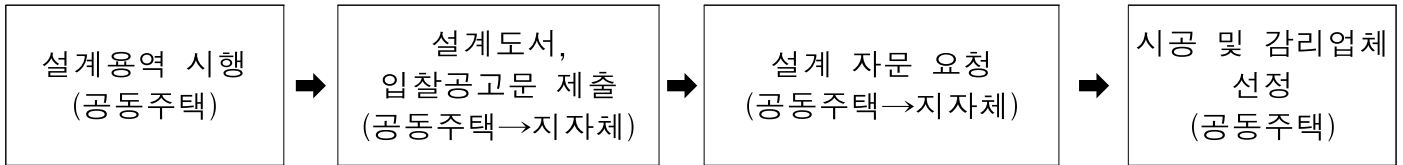
### Ⅶ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서류 제출 후 지원 승인 알림 이전에는 담당부서의 요청 외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함.
3.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4. 신청서 및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시 폐기처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됨.

6. **반드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공사 시행.**

7.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사 시행 전 다음 절차 사전이행 필요.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급수계(☎063-454-5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1부.
  4.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







